

[참고] 「2025년 그린리모델링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설명회 Q&A

'26.2.26.(목)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2025년 그린리모델링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설명회 Q&A 주요 내용*을 공유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그린리모델링 인재양성 플랫폼’ 공고 내용에 맞추어 일부 수정

□ 사업비 관련

Q1. 「그린리모델링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은 대학회계, 산단회계 중 어디를 통하여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하여 사업등록,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이 가능하고, 보조금 사업관리, 사업비 집행처리 등이 가능한 범위에서 대학회계 및 산단회계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Q2. 「그린리모델링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을 위해 채용되는 인력의 급여는 학교자체 규정을 따르는 것인지 별도의 상한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대보험 지급이 학교측 부담액을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본 사업을 위해 채용되는 인력의 급여는 해당 인력의 자격, 경력, 역할 등에 따라 기관내부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건비성 지급의 경우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주요 점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 지급은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 집행시 발생하는 4대보험 법인부담금을 의미하며, 해당 비용은 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참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점검 가이드라인」 등

Q3. 연차별 예산 배분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 ☞ 연차별 예산은 각 학교에서 계획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Q4. 예산활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사업공고문 [붙임 4. 그린리모델링 특성화대학 사업비 편성·집행 기준표]를 준수하여 예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준표에 없는 항목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을 참고하여 집행계획을 마련하되 사업선정 후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산학협력단에 지급하는 간접비, 유형자산 취득비 계상불가

Q5. 교육 및 실습환경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기자재 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본 사업은 교육 및 실습환경 구축 등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이 불가합니다. 필요시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공고문 [붙임 4. 그린리모델링 특성화대학 사업비 편성·집행 기준표]

Q6.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을 하는 방법은 [① 등록금(한국장학재단 기준), ②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대학에서는 운영기관에서 정한 예산 비목에 따라 장학금 지급방식이 달라지는데 예산비목이 등록금인지 등록금+생활비인지 궁금합니다.

- ☞ 본 사업의 장학금 예산비목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을 기준으로 '보전금(310)-보상금(01)' 비목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각 대학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절차, 지원내용, 관리방안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내부 장학금 지급기준 등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해주시면 됩니다.

Q7. 장학금 수혜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 본 사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학금 수혜 비율은 없으나, 인재양성 목표 및 학생 1인당 장학금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장학생 선발 및 관리 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장학금 수혜 학생은 모두 특성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Q8. 사업 신청서 제출시 사업비 전용 계좌를 신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비 전용 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기존에 사용 중인 계좌정보의 제출이 가능하나, 사업선정 후에는 반드시 전용 계좌를 발급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운영 및 성과 관련

Q9. 특성화 교육과목은 현재 개설된 과목만 가능한지, 미래에 개편할 사항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특성화 교육과목은 개설된 교과목 및 신설하는 교과목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학교별 상황에 따라 교과목 신설이 어려울 수 있어 기본적으로 현재 개설된 교과목을 활용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교육내용을 특성화 방향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교과목을 신설하는 경우, 선정평가지 가점(최대 2점)을 부여하며, 이는 사업종료시까지 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참고) 특성화 교과목은 사업신청시 수업계획서 제출 필수

Q10. 특성화 교과목에서 기초/심화교과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고문 [붙임 1. 특성화 인정 교육과목]에는 ‘건축설비’가 기초교과에 포함되어 있지만, 커리큘럼상 ‘건축설비’를 심화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본 사업을 위하여 교과과정의 개편 및 운영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 1. 특성화 인정 교육과목]에 기재된 기초/심화 교육과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선정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커리큘럼을 운영해야 합니다.

Q11.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하는 교육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본 사업은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및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등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그린리모델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졸업 후 실무에 곧장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재학생들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적합한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Q12. 인력양성 목표의 기준이 해당학교 재학생이 대상인지 또는 기업 등 실무자들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학원생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본 사업은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 등을 보유한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학부생을 제외한 대학원생, 기업 등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인력양성 성과에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Q13. 인재양성 목표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재양성 목표는 사업종료 시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Q14. 대학간 또는 학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특성화 교육을 위해 필요시 유사 학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Q15. 「그린리모델링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 수료시 수료증이 발급되는지, 누구의 명의로 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수료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명의로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발행명의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Q16. 학사일정상 성적처리가 차년도 1월에 확정됩니다. 이 경우 인재양성 관련 증빙서류를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에 후속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학사일정과 사업종료일이 상이함에 따라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관련 증빙서류는 후속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학사처리 이후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인력양성 목표가 미달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미달성 인원에 비례하여 사업비가 환수되니 참고 바랍니다.

Q17. 사업시행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초 교과목에 한하여, 최대 6학점 이내 소급 가능합니다.

Q18. 인재양성 목표는 학점 이수자 및 졸업생 중 어느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재양성 목표는 학점 이수자(교과+비교과)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Q19.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필요한 자료 등을 타기관 공동으로 만들어서 활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의 개편 및 운영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기관의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예산작성 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하여 위탁용역의 형태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듯이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